

행위제한 ·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우리 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3년 7월 27일

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가. 제한지역

연번	제한지역			아파트명칭	비고
	동명	지번	면적(㎡)		
1	목5동	901번지	163,197.4	목동신시가지아파트 1단지	
2	목5동	902번지	155,041.1	목동신시가지아파트 2단지	
3	목5동	903번지	146,538.1	목동신시가지아파트 3단지	
4	목5동	904번지	101,514.5	목동신시가지아파트 4단지	
5	목5동	912번지 일대	179,339.8	목동신시가지아파트 5단지	
6	목5동	911번지	94,634.5	목동신시가지아파트 6단지	
7	목1동	925번지 일대	180,149.9	목동신시가지아파트 7단지	
8	신정6동	314번지	71,410.3	목동신시가지아파트 8단지	
9	신정1동	311번지 일대	175,926.3	목동신시가지아파트 10단지	
10	신정7동	326번지 일대	121,591.9	목동신시가지아파트 12단지	
11	신정6동	327번지 일대	162,139.7	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	
12	신정6동	329번지 일대	215,214.2	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단지	
13	신월7동	987-1호	113,975	신월시영아파트	

나. 제한사유

- 우리 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함

다. 제한대상 행위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
(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)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제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
(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)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토지 분할

라. 적용예외

- 제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마. 제한기간 : 고시일로부터 3년

바. 관련도면 : 지형도면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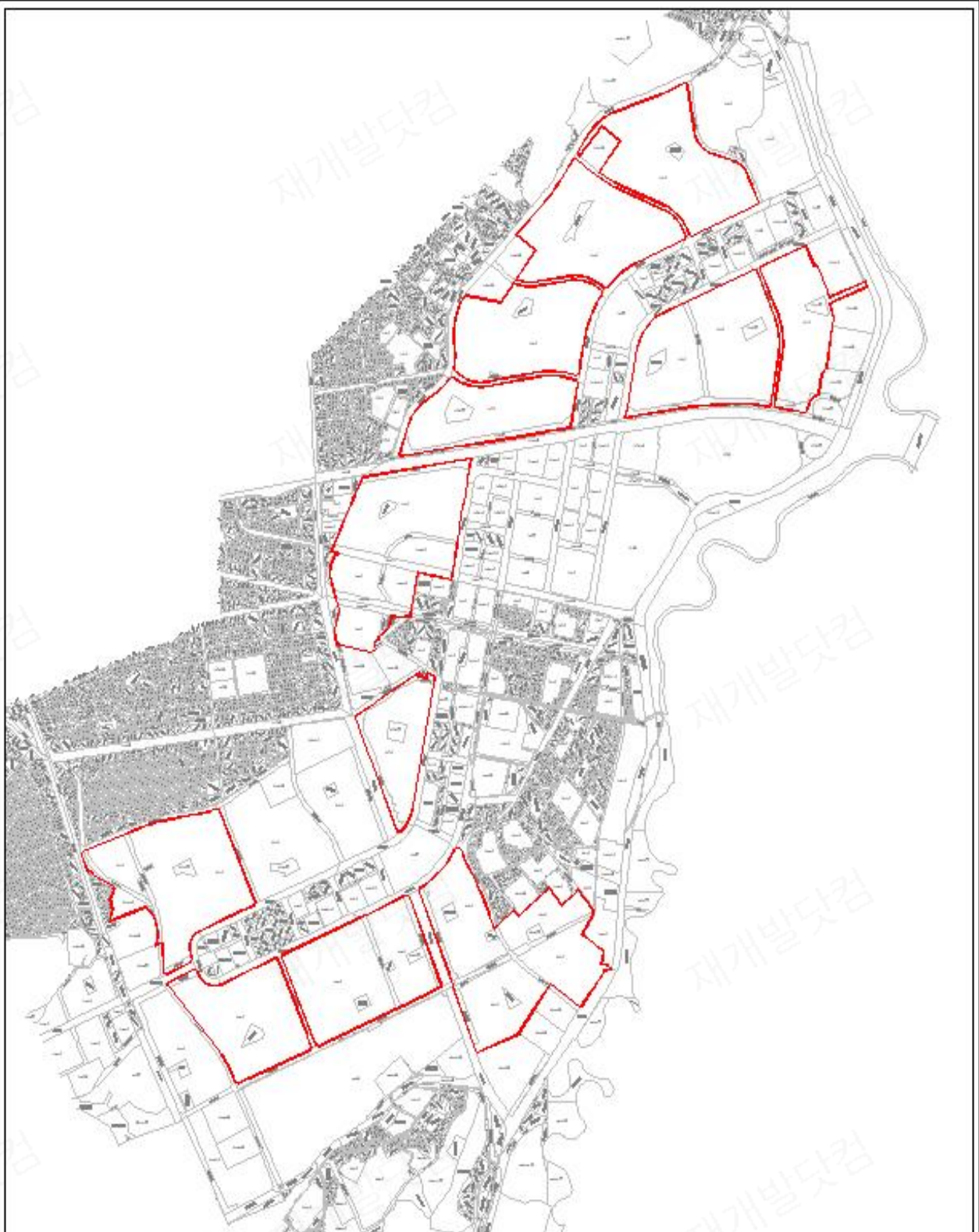
사. 기타사항 문의 : 양천구청 재건축사업과(☎02-2620-3452)

□ 위치도



□ 지형도면

－ 목동아파트 12개 단지



서울목동지구
택지개발사업
지구단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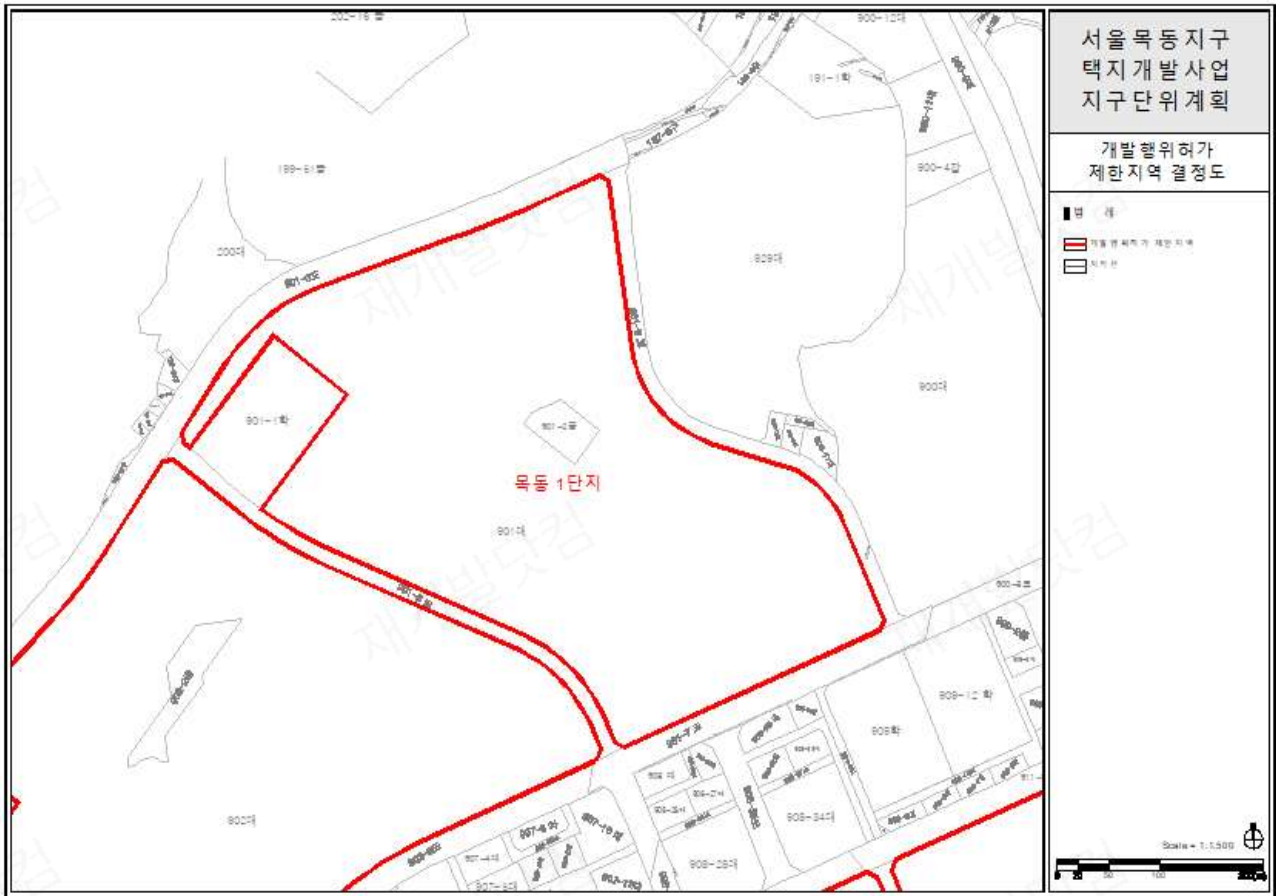
개발행위가
제한지역 결정도

서울광역시가 재건축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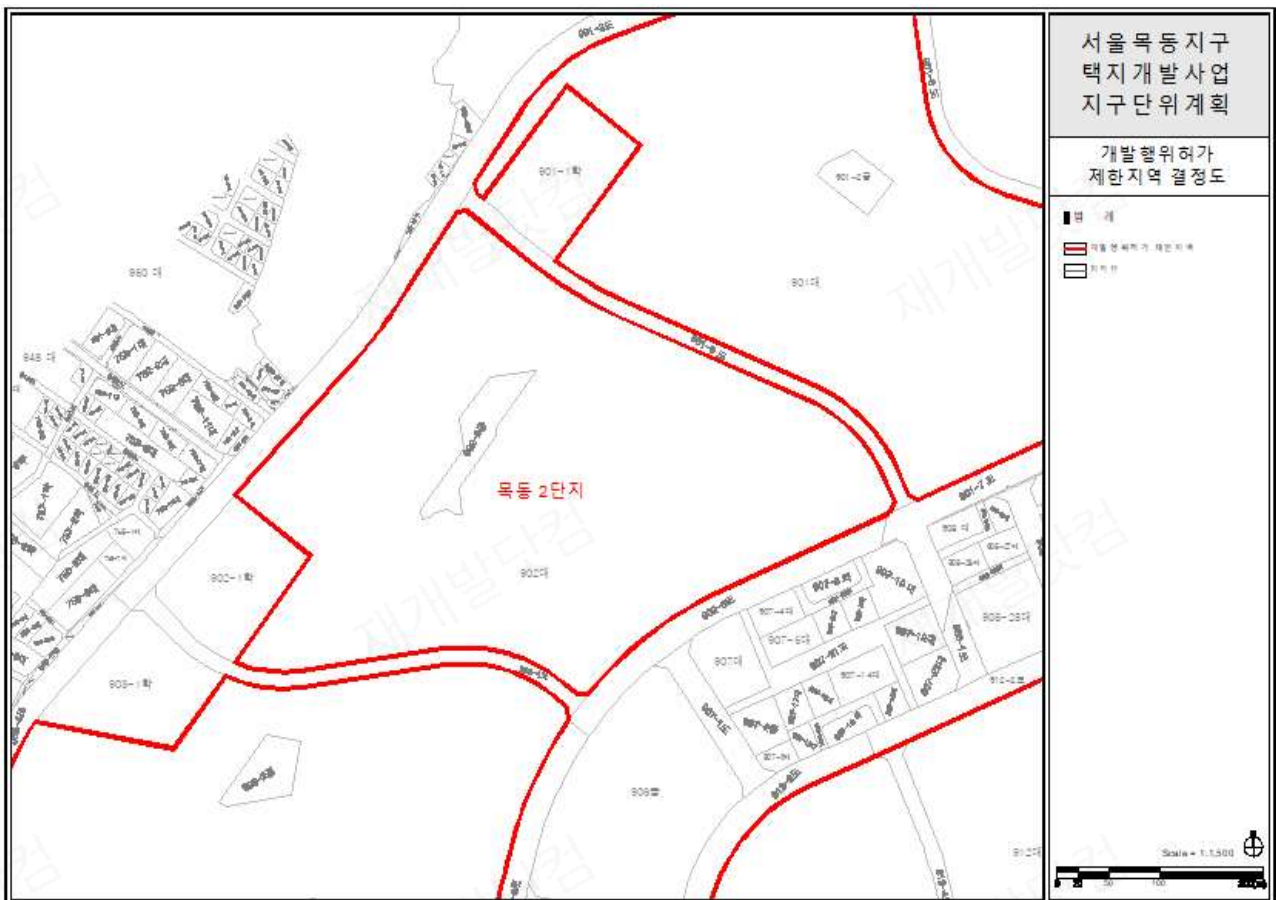
SCALE = 1 : 6,500



① 목동아파트 1단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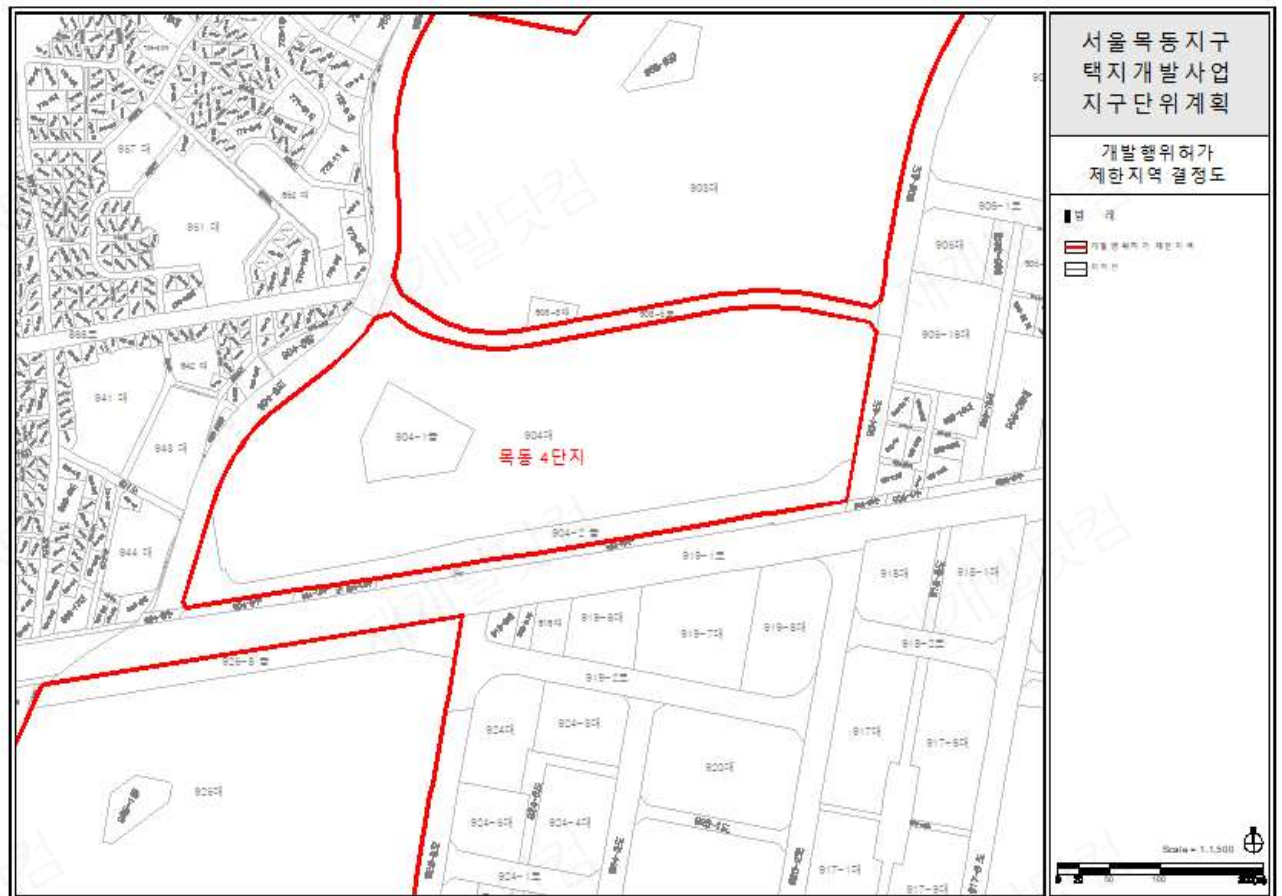
② 목동아파트 2단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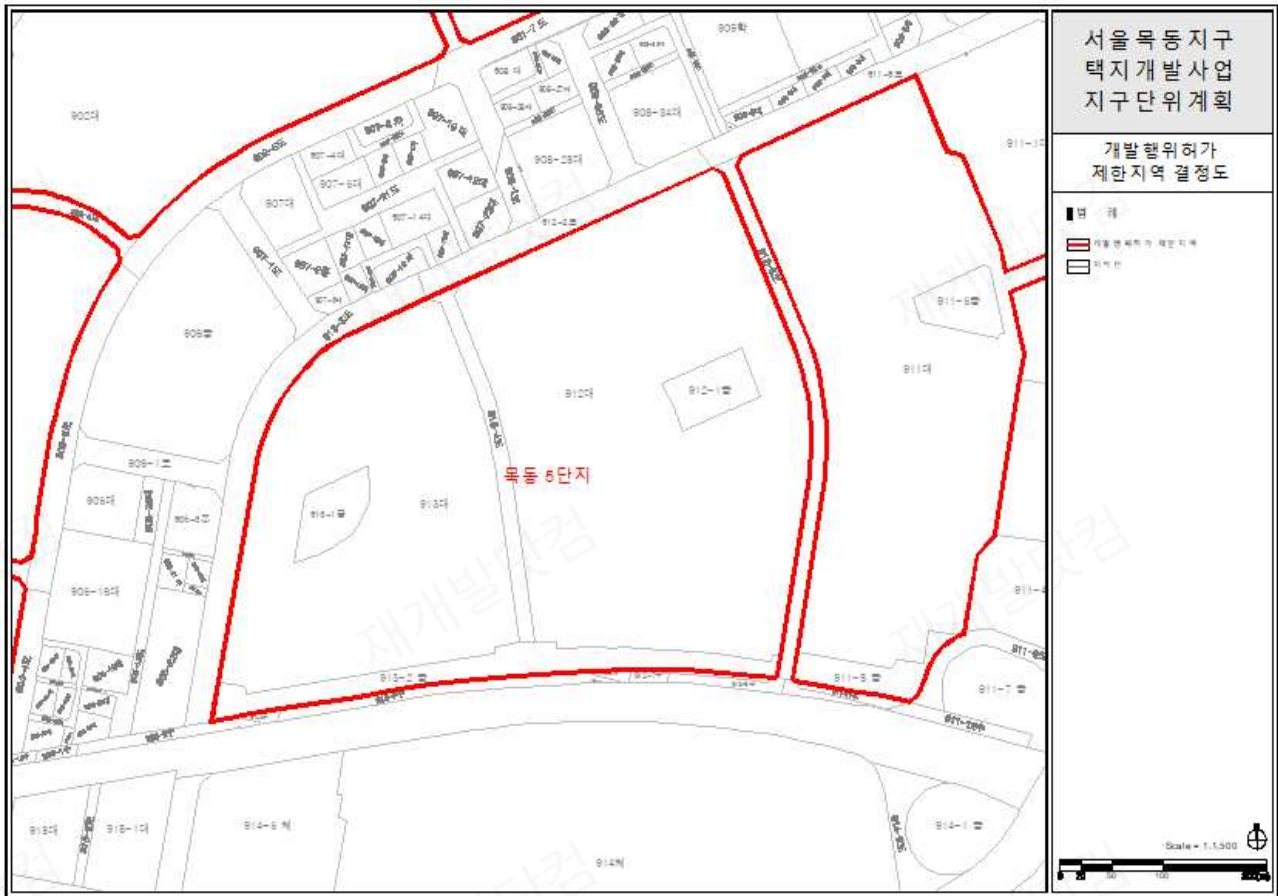
③ 목동아파트 3단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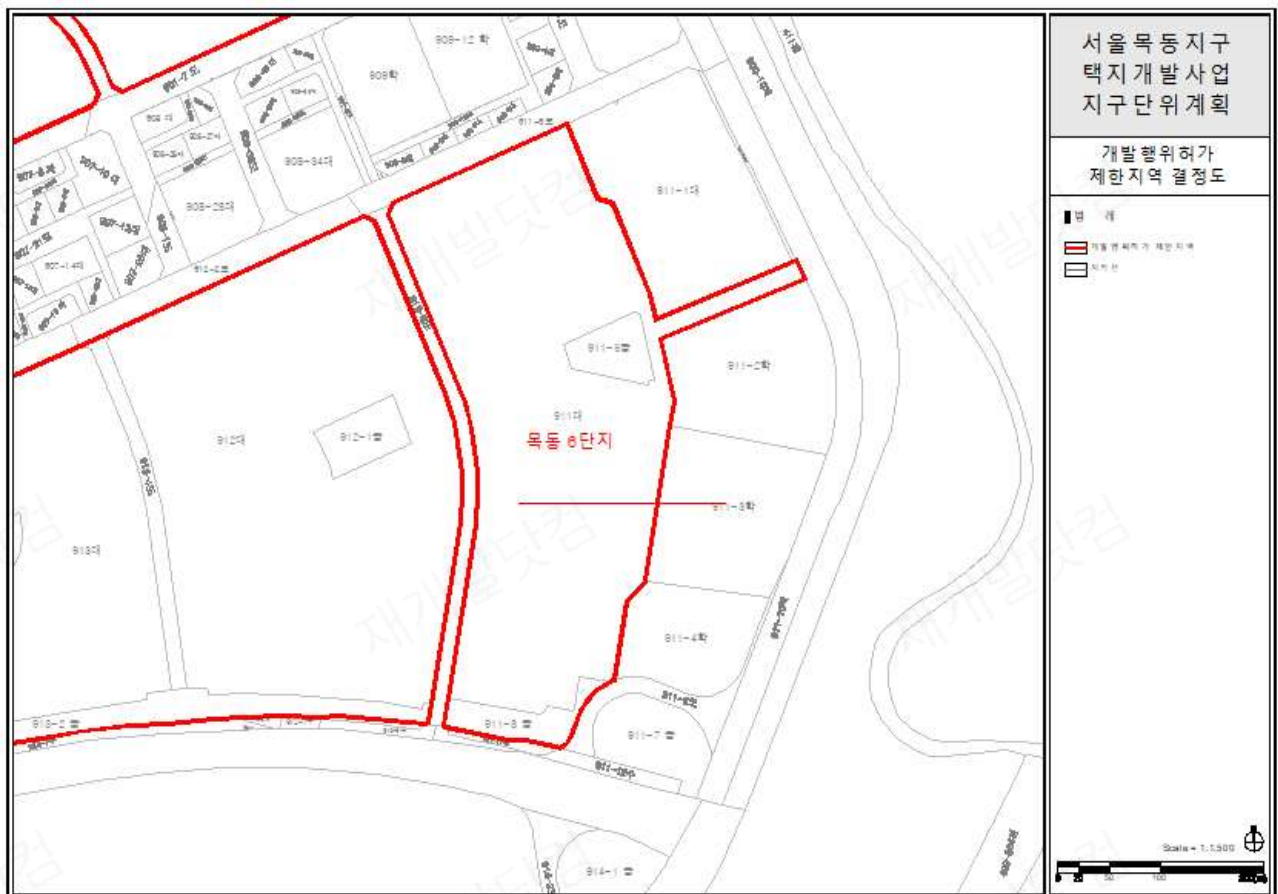
④ 목동아파트 4단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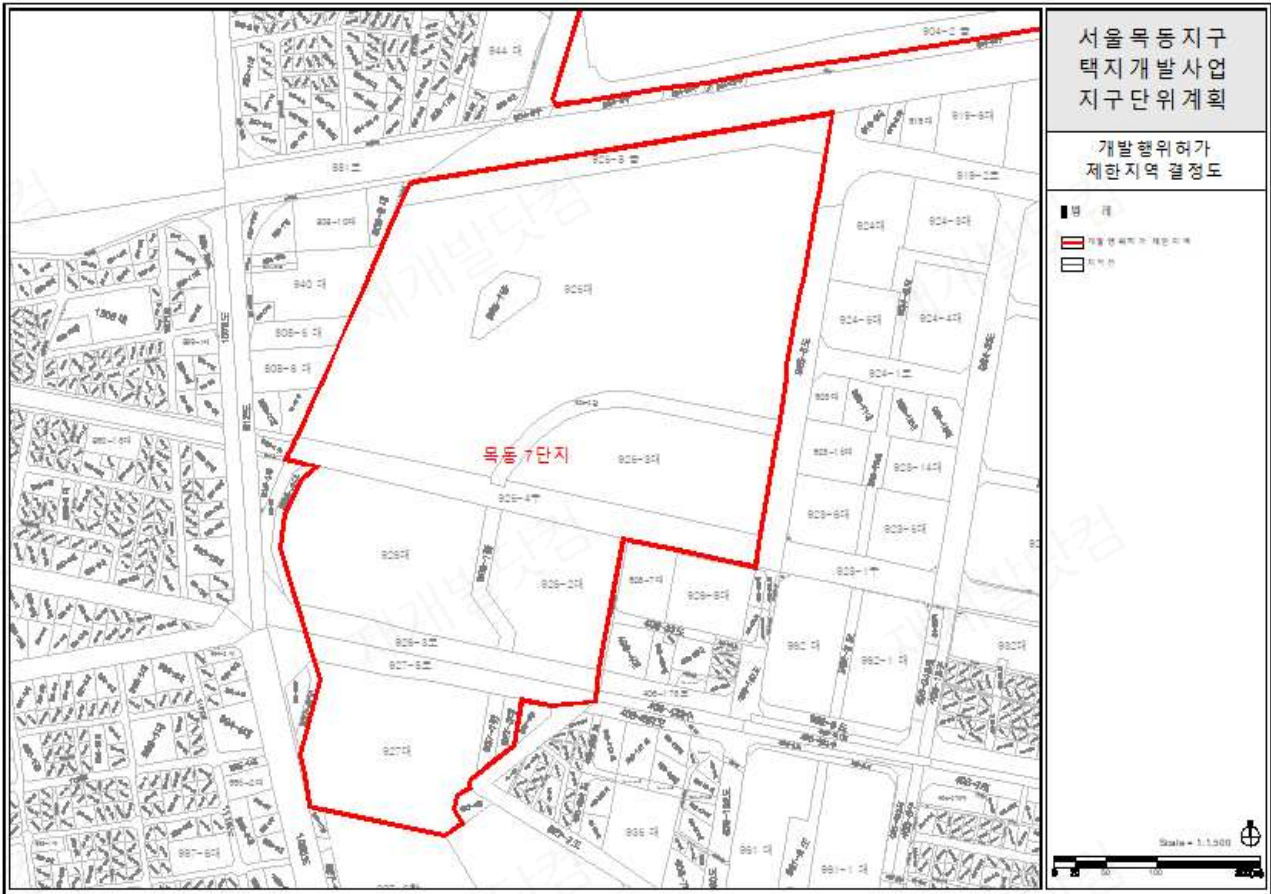
⑤ 목동아파트 5단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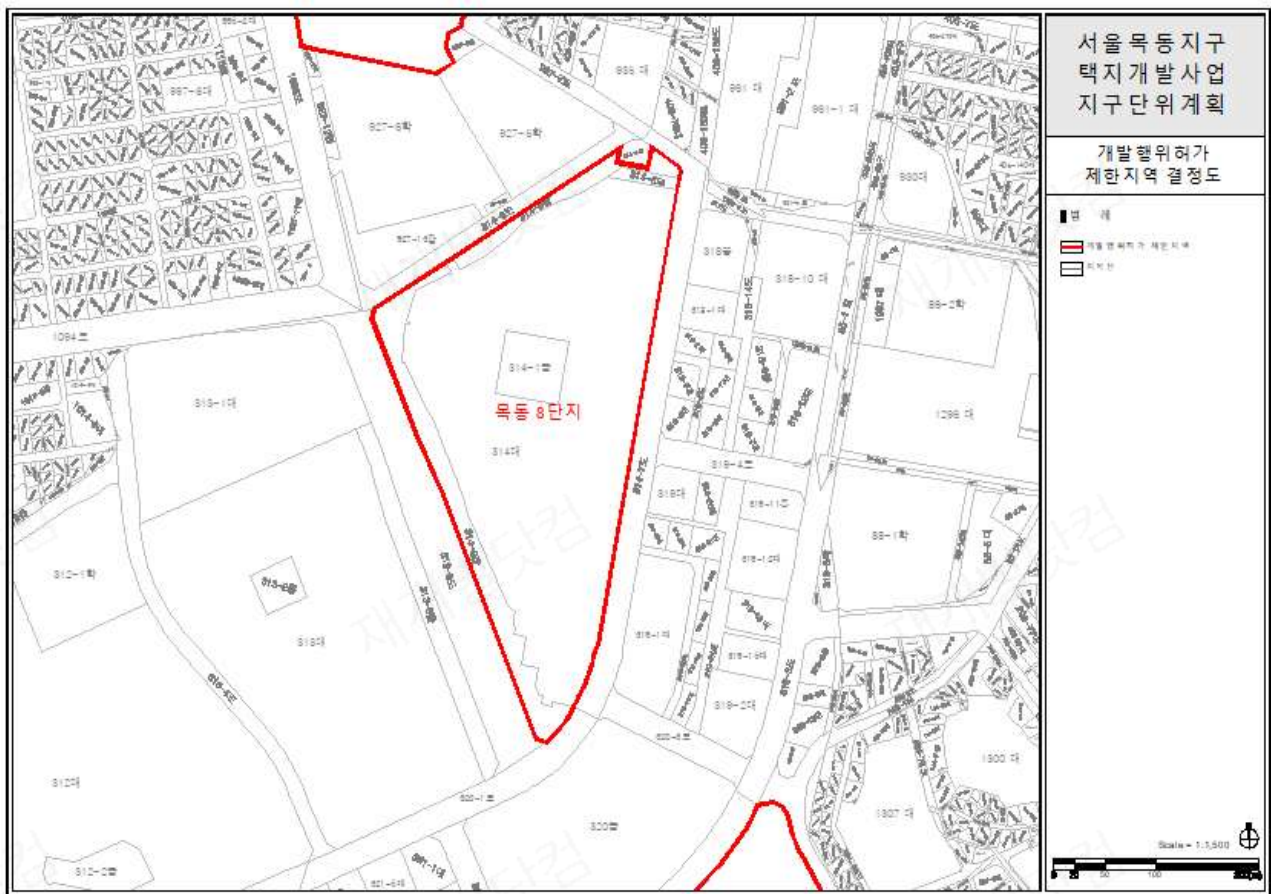
⑥ 목동아파트 6단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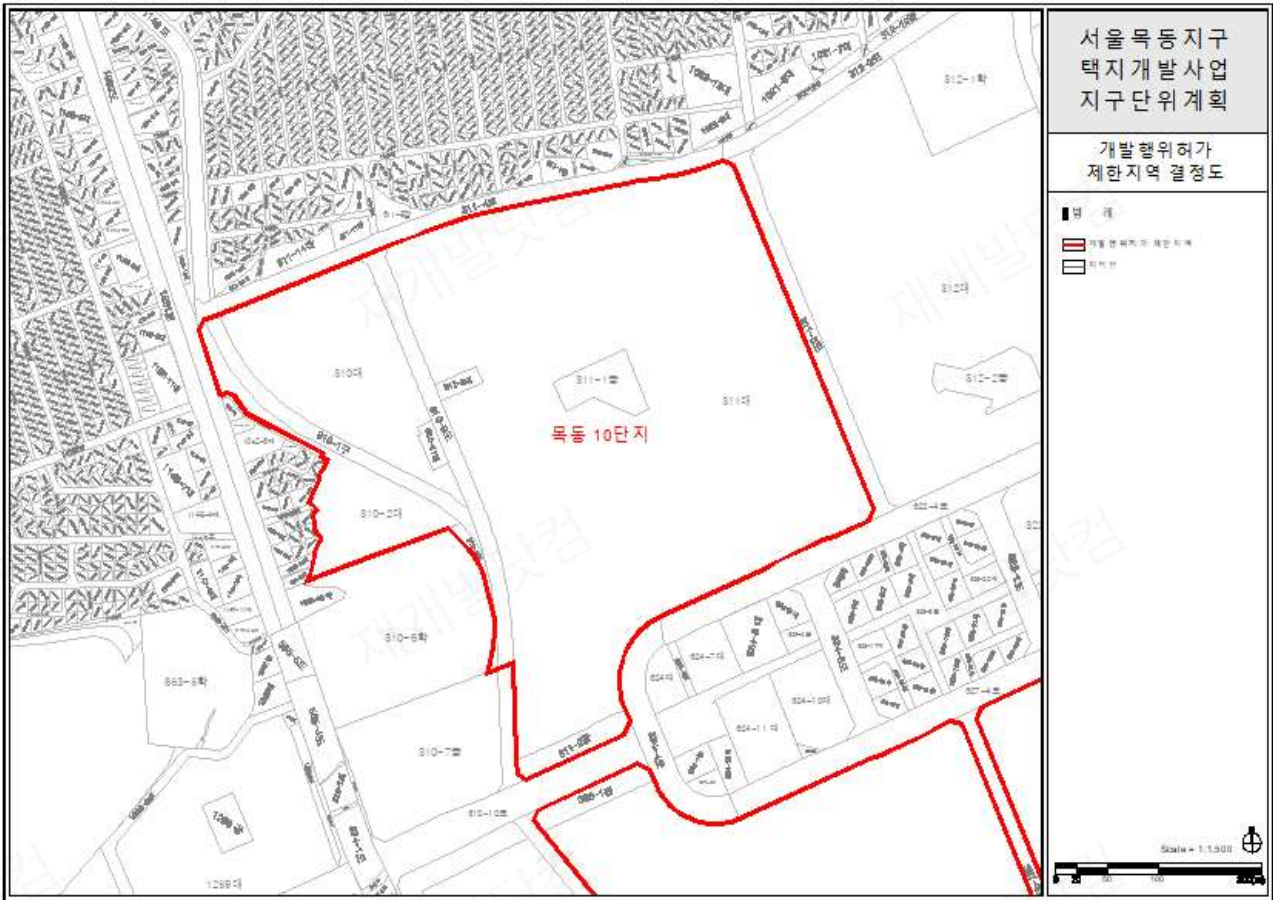
⑦ 목동아파트 7단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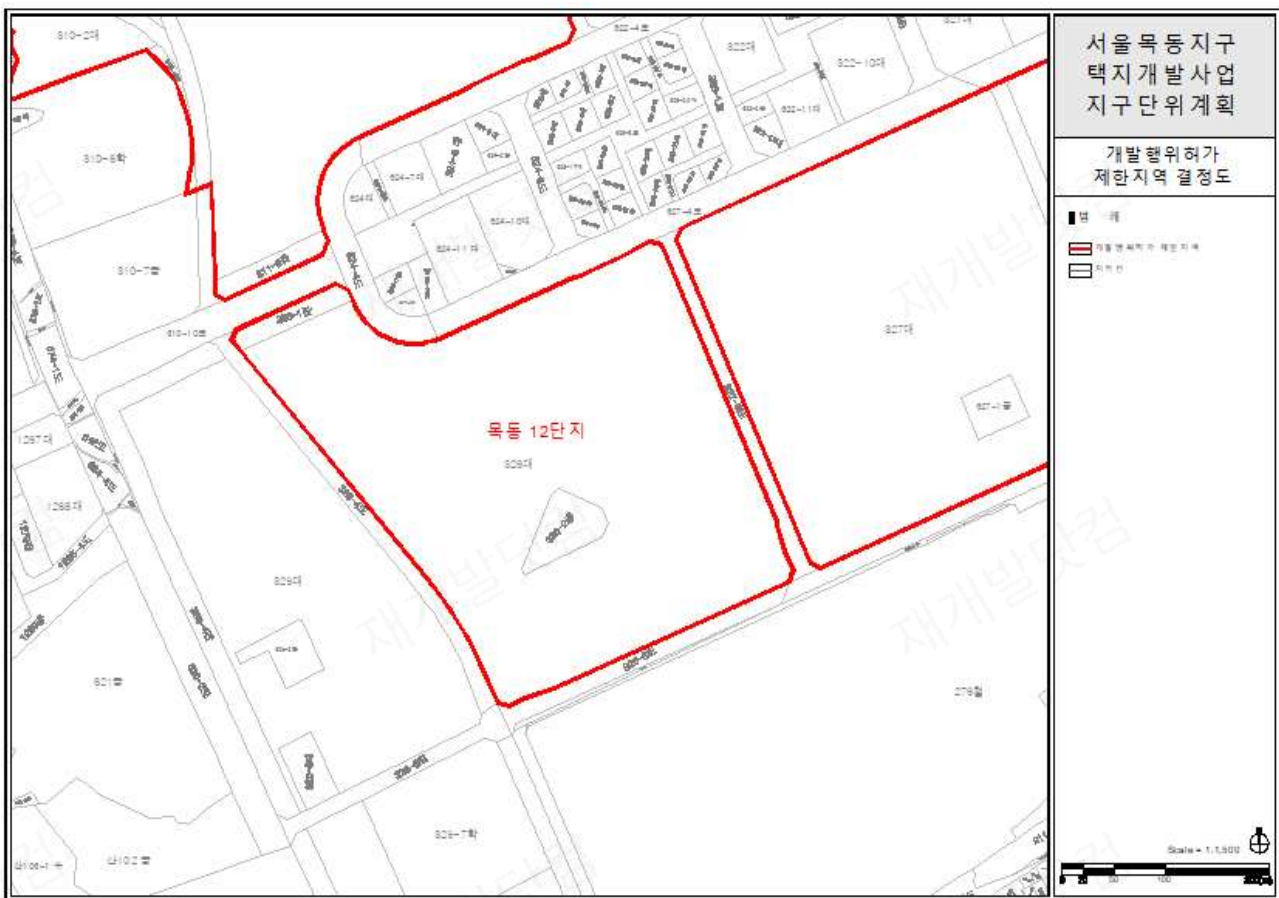
⑧ 목동아파트 8단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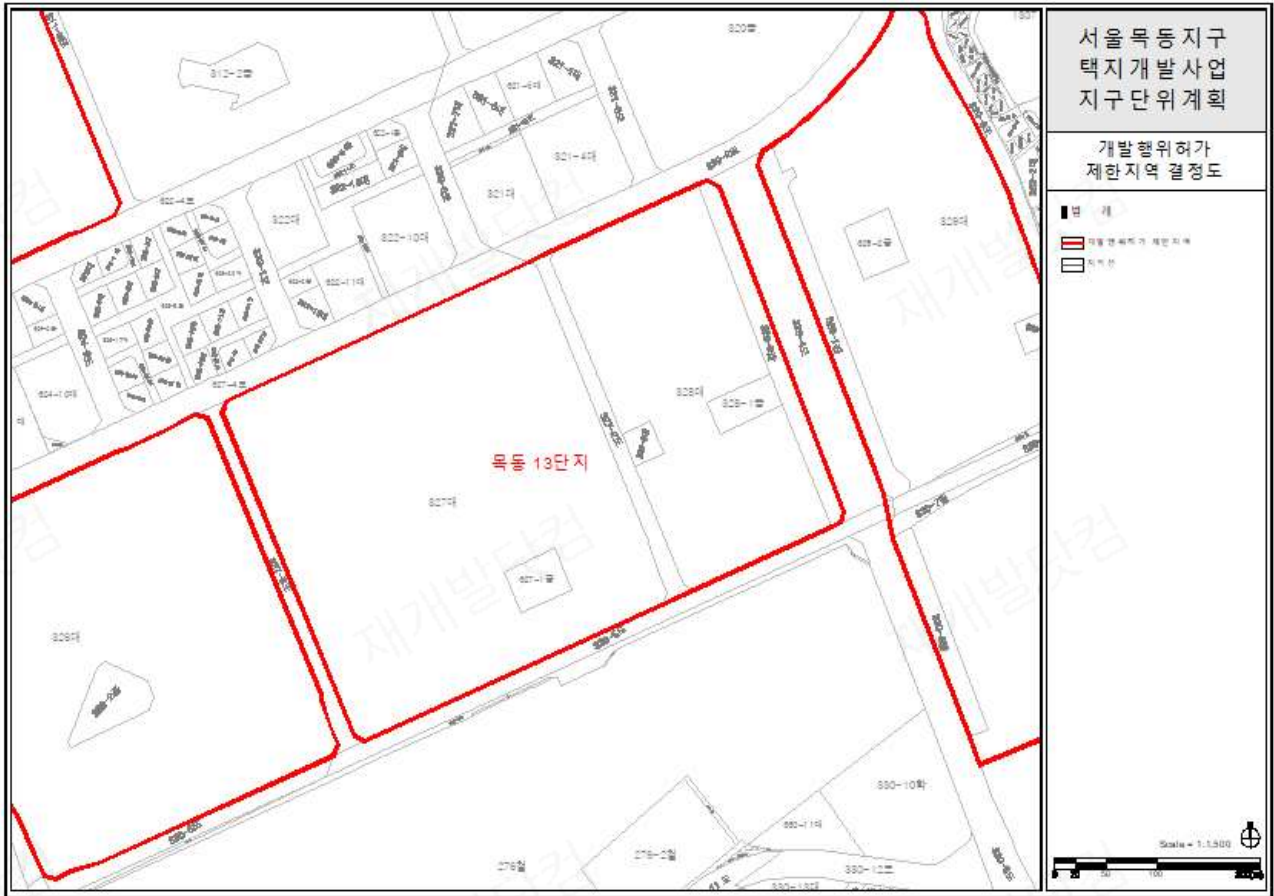
⑨ 목동아파트 10단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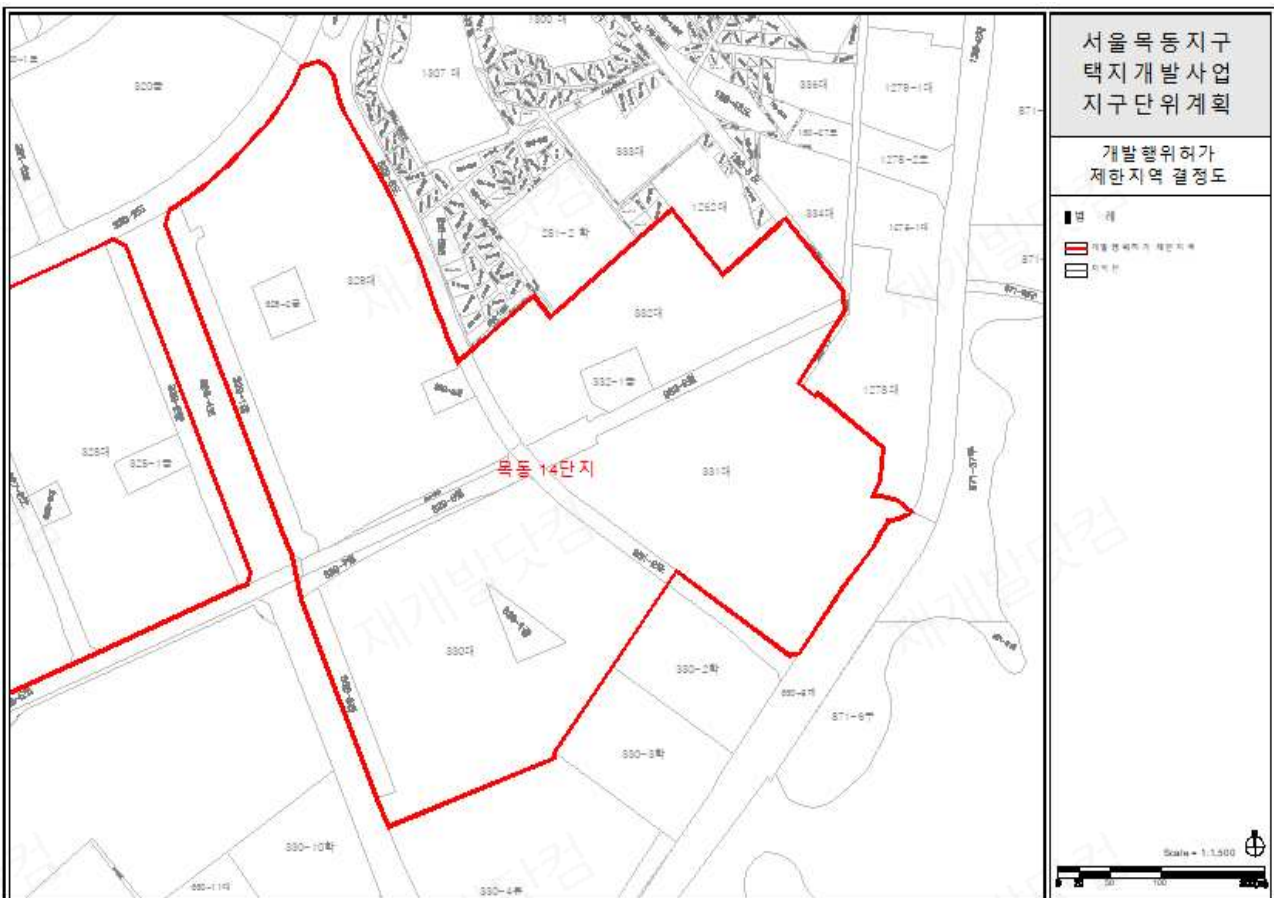
⑩ 목동아파트 12단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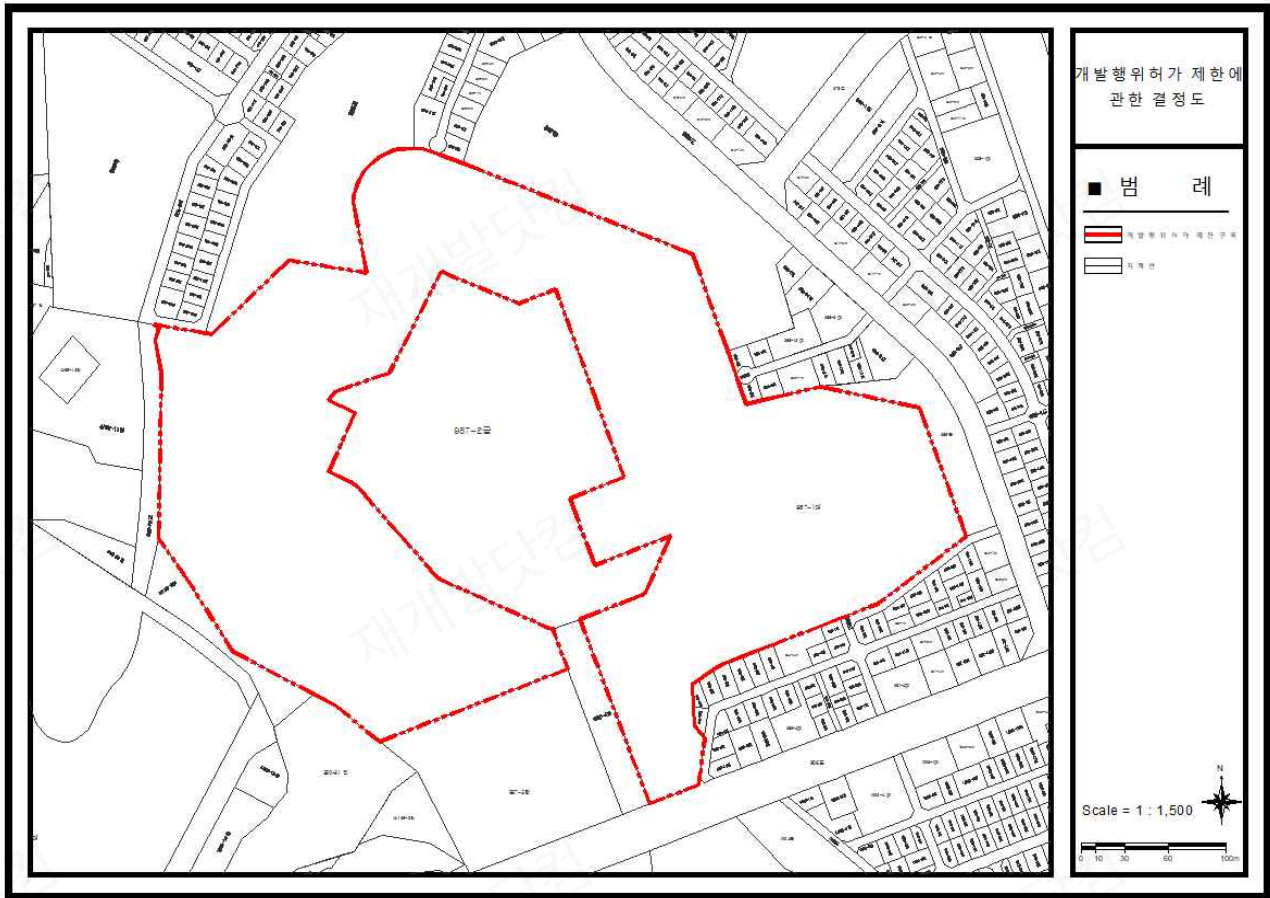
⑪ 목동아파트 13단지



⑫ 목동아파트 14단지



⑬ 신월시영아파트

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